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현행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입목·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 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, 염소 등 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,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영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임업용산지 내 가축방목 시 입목·대나무 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

(안 제12조제13항제6호다목)

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(52종)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, 염소 등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함

나.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중복성 제거(안 제13조

제6항제3호)

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영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

다. 산지전용허가기준 관련 연계조문 미비사항 정비(안 제20조제7항제1호, 별표 3의2 제1호, 별표 4 비고 제4호·제5호)

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35374호, 2025.3.11. 공포·시행)으로 별표 4 제2호다목 세부기준란 2)가 3)으로 변경되고 4)의 내용이 추가되어 연계조문 정비

라.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‘농림어업인’의 범위 명확화(안 별표 4 비고 제8호 신설)

산지전용허가기준 중 ‘농림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’에 적용되는 ‘농림어업인’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른 법인을 제외한 농업인, 임업인, 농업경영체, 어업인으로 명확히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3항제6호다목 중 “설치할 것”을 “설치할 것[「축산법」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 중 말, 면양, 염소(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인 유산양을 포함한다), 사슴, 노새, 당나귀, 토끼에 한정한다]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20조제7항제1호 중 “다목1)·2)”를 “다목1)·3)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2 제1호가목1) 단서 중 “제2호다목1)·4)”를 “제2호다목1)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1) 단서 중 “제2호다목1)·4)”를 “제2호다목1)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1) 단서 중 “제2호다목1)·4)”를 “제2호다목1)”로 한다.

별표 4 비고 제4호 및 제5호 중 “다목1)·2)”를 “다목1)·3)”으로 하고, 같은 표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1호마목15)에서 “농림어업인”이란 「농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,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의 임업인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), 같은 조 제2호·제3호의 임업인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

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, 법인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) ① ~ ⑫ (생략)	제12조(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
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	⑬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「축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	6. ----- ----- ----- -----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입목·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	다. ----- ----- <u>설치할 것[「축산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 중 말, 면양, 염소(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인 유산양을 포함한다), 사슴, 노새, 당나귀, 토끼에 한정한다]</u>
6의2. ~ 12. (생략)	6의2. ~ 12. (현행과 같음)
⑭ (생략)	⑭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) ① ~ ⑤ (생 략)

⑥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·2. (생 략)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

⑦ (생 략)

제20조(산지전용허가기준 등) ① ~ ⑥ (생 략)

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, 100분의 10(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) 범위에서 완

제13조(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⑦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산지전용허가기준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화할 수 있다. 1. 별표 4 제1호마목6),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<u>다목1)</u> <u>· 2)</u>에 따른 허가기준 2. (생략)	-----. 1. ----- ----- <u>다목1)</u> <u>· 3)</u>----- 2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지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141